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79

발의연월일: 2022. 4. 25.

발 의 자:이종성·강기윤·김용판

박대수 · 박덕흠 · 박형수

서정숙 • 유경준 • 이명수

전봉민 · 정동만 · 정우택

조명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보 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 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 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 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
	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9조의2(우선구매) ① 국가, 지
	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
	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
	<u> 여야 한다.</u>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
	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 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